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31.>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0제3항 관련)

구 분	시 설 내 용	적 용 범 위
1.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가.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1) 보일러·요(窯)·로(爐) 및 그 부속장치 (산업·건물 공통) 가) 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요(窯)·로(爐) 요·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내·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건물 공통) 가)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나)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다) 그 밖에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라) 폐열회수형 히트펌프(공기열원은 제외한다)

마) 클링커 냉각기(Cross Bar Cooler)

4)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산업·건물 공통)

가) 원심식 다단진공펌프(실워터가 불필요하고 공기량이 자동조절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고온응축수펌프(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유체기기에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압축기(인버터제어)

마) 고속 터보블로워[전동기직결형으로 1만 회전수(rpm) 이상으로 한정한다]

바) 고효율 변압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고효율 제품으로 한정한다)

사) 프리미엄급(IE3 또는 IE4) 삼상유도전 동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산업용 설비

가) 어큐물레이터

나)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인버터)
[220킬로와트(kw)이하는 고효율인증기자재로 한정한다]

다) 증기 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라) 다중효용증발관(3중 이상으로 한정한다)

	마) 산소부하시스템 바) 증기재압축장치 사) 증기터빈 구동식 동력장치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가)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온도·조명·열원·풍량·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 다) 가습공조장치(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 라) 야간단열장치 마) 태양광차단장치 7)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전력수요관리 설비	1) 역률자동조절장치 2)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수요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전기대체냉방시설(건물 각 층에 설치되는 공조기 및 냉온수배관은 제외한다) 가) 가스냉방시설 나) 축열식냉방시설 다) 흡수냉방시설
다. 고효율인증기자재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2) 고효율인증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 원심식 송풍기 6) 향온향습기

		7) 고기밀성 단열문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9) 스마트엘이디(LED) 조명시스템
	라.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인증한 자동절전제어장치
2.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나.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	1) 수소생산시설(연료개질설비로 한정한다) 2) 수소압축시설 3) 수소저장시설(수소충전소 내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